

「소상공인 새희망자금」 시행 공고(2차, 확인지급)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「소상공인 새희망자금」 지원계획(2차, 확인지급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* 이 공고는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시행 공고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확인된 신속지급에 대해서는 9.23(수) 既 공고

2020년 10월 15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목적

-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

2.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□ 지원대상 및 금액

공통사항

- '20.5.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
-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(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)
-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

- ① (일반업종) '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: 100만원

- ('19년 이전 창업자) '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'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('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)

- '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
- ※ '21.1월 부가세 신고로 '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

- ('20년 창업자) '20.5.31 이전 창업자로서 6~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8월 매출액이 6~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

* 국세청이 보유한 6~8월 신용카드 매출액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

- ② (특별피해업종) 소상공인*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① 집합금지 대상 : 200만원, ② 영업제한 대상 : 150만원

*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(음식·숙박업 10억원, 도소매업 50억원 등) 이하이고, 상시근로자 5인(광업, 건설업, 제조업, 운수업은 10인) 미만

<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>

구분	해당 업종 및 시설
① 집합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전국)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뷔페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집단운동, 실내스탠딩공연장, PC방 • (수도권) 학원(10인 이상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
② 영업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수도권)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 제빵·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

- 「감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.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,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,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

-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(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)

*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

<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세부 지원기준(안) >

구분	일반업종	특별피해업종	
		영업제한업종	집합금지업종
소상공인 여부	○	○	○
매출액 규모	연 4억원 이하	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(예: 유흥주점 10억원 이하,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)	
매출 감소	○	무관	무관
지원금액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

□ 지원 제외대상
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 등 전문직종,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
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
-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*에서 지원받은 경우

*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부),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(복지부) 등

-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
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

-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* 소상공인

* '20년 매출이 없는 경우, '19년 및 '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
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125조에 따른 14개*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(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)

*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건설기계 기사, 골프장 캐디, 쿼서비스 기사, 택배기사, 대출 모집인, 신용카드 모집인, 대리운전 기사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방문 교사, 가전제품 설치 기사, 화물자동차운전사

- 단, 아래 경우에는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

-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'특고·프리랜서'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인 영세 자영업자가 된 경우 등
⇒ '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(50만원) 반환확인서' 필요(고용센터 발급)
-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
⇒ '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' 필요(고용센터 발급)
-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
⇒ 자가진단표(붙임 제6호 서식)

※ 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3. 확인지급 신청대상

-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(신속지급 대상 미포함자)

- 추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

*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, 공동대표, 미성년자, 가족 명의 계좌 수령(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)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온라인 취약계층 등

4. 확인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

* 신청·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

- 온라인 신청(원칙) : '20.10.16(금)~11.6(금)

-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* 접속(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) 후 증빙자료 업로드

* ①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새희망자금(또는 새희망자금)"을 검색 또는
② 주소창에 "새희망자금.kr"을 입력

- 현장 방문 신청(예외) : '20.10.26(월)~11.6(금)

-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

*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(전국 2,825개소) 현황 : 별도 첨부 파일 참조

* 현장 접수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

- 원활한 신청·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.26(월)~10.30(금) 5부제 실시

* 11.2(월)~11.6(금)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

< 현장 방문 신청 5부제 일정 >

일자	10.26(월)	10.27(화)	10.28(수)	10.29(목)	10.30(금)
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	1, 6 (예: 1961년생, 1966년생)	2, 7	3, 8	4, 9	5, 0

5. 확인지급 신청서류

□ 공통서류 (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)

-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본인 인증, 기본정보 입력 등으로 갈음

* (기본정보) 업체명, 대표자명, 연락처, 사업장 주소, 입금계좌 등

구 분	증빙자료
① 신청서(붙임 제1호 서식)	•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, 입금계좌 정보 등 기재
② 대표자 및 계좌 확인	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• 통장 사본(대표자 명의, 법인은 법인 명의)
③ 각종 동의서 (붙임 제2·3호 서식)	• 개인(행정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서 •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

□ 추가서류 (신청 유형별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구 분	증빙자료
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관련 직종 사업체	•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⇒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(고용센터 발급) •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'특고·프리랜서'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등 ⇒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(고용센터 발급) •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 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⇒ 자가진단표(붙임 제6호 서식) * 신청자 명단은 고용부에 통보하여 확인 예정이며, 자가진단표 허위 판정 시 환수 예정
② 공동대표 사업체	• 위임장(붙임 제4호 서식)
③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	• 위임장(붙임 제4호 서식)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 명의 통장 사본
④ 가족 대리 신청 (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)	• 위임장(붙임 제4호 서식), 가족관계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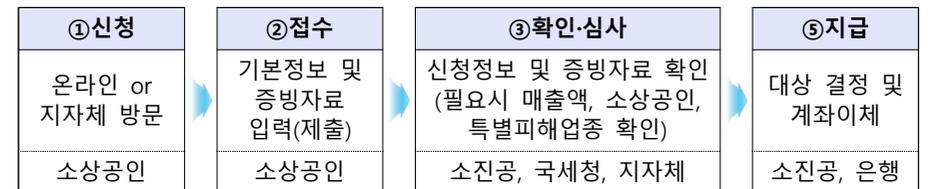
구 분	증빙자료
⑤ '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(6~8월) 신청 사업체 (일반업종에 한함) * '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(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)	• '20년 6~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 - 현금매출확인서(붙임 제5호 서식) - 통장거래내역서(입출금 내역서, 은행 직인(날인) 필수),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(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), POS 현금 매출액 등 *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, 장부 등은 불인정 *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며, 허위 기재 판정 시 지원금 환수
⑥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	• 설립 인증서 등 * 사회적기업 인증서,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, 사회적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·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, 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·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중 1
⑦ 합기도 체육도장 *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 시행('19.12.26)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 후 '20.6.1~6.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장에 한함	• 폐업사실증명
⑧ '20.6.1 이후 개인→법인 전환 사업체	• 폐업사실증명(개인사업자)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6. 확인지급 신청 · 처리절차

□ 개요

- 온라인 또는 지자체(방문) 신청 · 접수 후 기본정보 · 증빙자료 확인(소진공) 및 소상공인 · 매출액(국세청), 특별피해업종(지자체)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, 지급

< 신청 처리 절차 >



□ 온라인 신청

- ① (신청) 온라인 사이트(새희망자금.kr) 접속,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
- ② (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)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- ③ (본인인증)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(개인, 법인)
- ④ (신청정보 입력)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(해당자) 업로드
* (기본정보 및 추가서류) "5. 확인지급 신청서류" 참조
- ⑤ (요건 확인) 소진공(집행검증단)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
 -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자(20년 창업자 매출 감소 신청(일반업종 포함)의 경우 국세청 추가 확인(소상공인, 매출 감소 여부 등)
 -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특별피해업종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특별피해업종(영업제한, 집합금지) 행정명령 대상 업체 해당 여부 추가 확인
- ⑥ (지급) 지급대상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

□ 현장 방문 신청

- ① (신청) 지자체(현장 접수처) 방문, 신청서류(공통, 추가) 제출
* (신청서류) "5. 확인지급 신청서류" 참조
- ② (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)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
- ③ (요건 확인) 소진공(집행검증단)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
 -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자(20년 창업자 매출 감소 신청(일반업종 포함)의 경우 국세청 추가 확인(소상공인, 매출 감소 여부 등)
 -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특별피해업종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특별피해업종(영업제한, 집합금지) 행정명령 대상 업체 해당 여부 추가 확인
- ④ (지급) 지급대상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

□ 이의신청

- 확인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붙임 제7호 서식)를 작성하여 온라인(원칙)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

7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체 반납하지 않음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8. 신청 문의

- 전화 문의 :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: 1899-1082
-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새희망자금.kr) - 24시간 채팅 상담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	○ 본인 :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업체명, 통장계좌번호, 통장사본 등 ○ 대리인 :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위임자와의관계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목적	제공받는 자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새희망자금 지원관련 적격여부 판단	중소벤처기업부,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전국 새희망자금 취급 지자체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신한은행,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	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업체명, 통장계좌번호, 개업일, 매출액 및 매출증빙관련 서류 일체, 업태/종목, 지급액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·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이용기관 명칭 : 중소벤처기업부,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전국 새희망자금 취급 지자체
- 이용사무 목적 :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
- 공동이용 행정정보 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업체명, 개업일, 사업장주소, 대표자정보, 업태/종목, 과세유형, 매출액, 카드매출 업무처리수증 발행 정보, 상시근로자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)
-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 :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(공동이용 행정정보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※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☞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?동의 미동의

고유식별정보 동의서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	○ 본인 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※ 기타 고지 사항

-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상담 및 신청,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, 개인정보,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·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신청인 (인, 서명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

① 부정수급 금지

- 아래 확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.

- 아래 확인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, 증빙서류,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- 만약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구분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(최대)
지원금 수령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	500%
	2)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100%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② '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' 중복수혜 금지

- 본인은 "소상공인 새희망자금"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- 만일,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,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.

[중복수혜금지 대상]

기관	명칭
중소벤처기업부	소상공인새희망자금
보건복지부	긴급생계지원자금
고용노동부	긴급고용안정지원금*

* "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"은 해당 지원금 수령자중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or 반납확인서 제출시에만 지급 가능(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문)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③ 새희망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

-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"소상공인 새희망자금"에 대해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.

-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
-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
-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④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

- 상기 본인이 "소상공인 새희망자금"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만약, 위 ①,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.

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.

2020년 월 일

동의 및 확인자 (인, 서명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